

대 회 규 정

제1조 본 대회는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하키대회라 칭한다.

제2조 본 대회는 (사)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.

제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, 일자 및 장소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.

제4조 본 대회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한하키협회 2023년도 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팀 이어야한다.
2. 지도자(부장, 감독, 코치, 트레이너) 및 선수는 한 팀에만 등록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다.
3. 동일 소속 팀에서 남자, 여자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단체(팀)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감독 이 이중으로 등록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동일 대회 세부 종별에 중복 출전할 수 있다.

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.

1. 중등부 5인제는 조별 리그전으로 진행하며, 5팀까지는 풀 리그전으로 진행한다.
2. 중등부, 고등부 11인제는 토너먼트로 진행한다.
3. 중등부는 5인제, 11인제 중 한가지 종별을 선택하여 참가신청 하여야 한다.

제6조 본 대회 11인제 경기 시간은 중등부 , 고등부 총 60분(15분*4쿼터)으로 하며, 휴식시간은 1쿼터.

종료 후 2분, 2쿼터 종료 후 10분, 3쿼터 종료 후 2분으로 한다.

1. 토너먼트전은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슛 아웃을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.
2. 슛 아웃은 슛 아웃 경기규정에 따른다.
3. 중등부 5인제 경기 시간은 총 20분(10분*전후반)으로 하며, 휴식시간은 5분으로 한다.
4. 중등부 5인제 리그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 채점방법은 승자 3점, 무승부 1점, 패자 0점으로 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(1)이긴 경기 수 (2)골득실 차 (3)다득점 (4)승자승 순으로 하며 이 네가지가 같은 경우 슛 아웃 5회로 한다. 슛 아웃을 진행하는 팀의 경기명단은 해당 경기 종료 10분 전 제출 되어야 한다. 시간 내 준비가 안 되는 경우 패배한 것으로 본다.
5. 3개 팀이 동점일 경우 추첨(1위, 2위, 3위 예비뽑기 방식)으로 순위를 결정한다. 이때 추첨순서는 대진 번호 순번으로 한다.

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18명 엔트리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한다.

제8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여 몰수패 를 당할 경우 5:0으로 패한 것으로 처리하고, 다음 경기에 11명의 선수가 되었을 시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. 단, 대진 추첨 후 고의적으로 특정 경기에 대하여 출전을 포기한 것이 확인된 경우 [대회조직위원회](#)에 회부 한다.

경기 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.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.

(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차이가 없을 경우 5: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, 득점차가 발생 시 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5골을 가산하여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.)

제9조 본 대회 경기 도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 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1.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 시간의 경기만 실시한다.
2.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정규시간의 경기를 실시한다.

3. 슛 아웃은 득점차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며, 5명 중 미실시 선수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부터 실시한다.

제10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 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.

제11조 대회 중 발생한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처리한다.

1. 경기 도중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며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(2분)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한다.
(몰수게임으로 처리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)
2.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 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.
(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.)
3.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 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, 사안에 따라 [대회 조직위원회에](#) 회부한다.
4.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(엘로우, 레드카드)와 선수는 [완전퇴장(레드카드)]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.
5. 경기 중 발생한 사안의 이의신청(부정선수, 심판판정, 경기장 질서문란)은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(단장, 부장, 감독 명의로) 이의 신청료 50만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.(이의 신청료는 환불하지 않는다.)
이에, 사안은 조직위원회(조직위원장, [대회경기위원장](#), [대회경기부위원장](#), [대회심판위원장](#), [대회심판부위원장](#))에서 결정한다.
6. 1~5호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우리 협회 [스포츠공정위원회에](#) 회부한다.

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

징계 대상	위반행위	징계기준
1. 대회 임원 및 심판	가.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	* 주의 및 경고
	나. 판정 오심 및 과실/경기진행 미숙	* 3~5일 활동정지
	다.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(음주, 소란 등)	* 6~10일 활동정지 * 11~15일 활동정지
2. 지도자, 선수관리 담당자	가. 심판판정 불복(경기지연) 폭언	* 주의 및 경고 * 3~5경기 출전정지 * 6~10경기 출전정지 * 11~15경기 출전정지
	나.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	
	다. 부정선수 출전 지시	
	라.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	
	마.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	
	바.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	
	사. 시설 및 기물 파괴 아.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(음주, 소란 등)	
3. 선수	가. 심판 판정 불복(경기지연) 폭언	* 주의 및 경고 * 3~5경기 출전정지 * 6~10경기 출전정지 * 11~15경기 출전정지
	나. 심판에 대한 폭행	
	다. 부정선수 출전	
	라. 선수상호간 폭행	
	마. 시설 및 기물 파괴	
	바. 경기장에서의 문란행위(음주, 소란 등)	
4. 단체(팀)	가. 심판판정 불복 및 경기진행 방해	* 출전정지 6개월 이하 ~ 출전정지 3년 이상
	나. 경기장 폭행 난동	

7. 벤치에 지도자가 없는 경우 몰수 패 처리한다.
 8. 팀 벤치에 감독, 코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“경기 중 시행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 9. 본 대회 참가 신청 마감 후 불참한 팀은 감독 벤치 활동 6개월 정지 처리한다.
 10. 상기 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“경기 중 시행 규칙”에 의거 처리한다.
- 제12조 본 대회 우승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 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단, 보관 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.
- 제13조 본 대회 대표자회의 시 대진 추첨은 팀 관계자(단장, 부장, 감독, 코치, 트레이너)만 참가할 수 있다.(선수는 불가하며, 팀 관계자가 아닌 자가 추첨 시 재 추첨 원칙으로 한다.)
- 제14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.